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년 3월 pp.223~248
한국세무학회

연결납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이준규** · 김갑순***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8년말 입법되고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결납세제도를 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완전지배 자회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의결권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주식의 환매조건부 양도나 양도후 매수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도 완전지배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의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신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에 대한 공제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집단에 대하여도 결손금의 소급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에 준하는 공제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연결집단에 속한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의 손익에 대하여 연결모법인의 주가가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상 세액분담액 보다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세무상 연결자법인에 대한 출자로 처리하고 연결자법인이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연결모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주제어> 연결납세, 이월결손금, 내포손익, 단일실체개념, 내부거래

* 본 논문은 200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삼일세무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uneqlee@khu.ac.kr, 02-961-9178, 제1저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ks@dongguk.edu, 02-2260-3293, 교신저자

I. 서 론

법인들이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법률 형식상으로는 각자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여서 독립적이지 않다면 과세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2 이상의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법인들의 집단에 대한 과세제도를 기업집단세제라고 한다.

기업집단세제는 국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지만 손익대체형(profit and loss transfer model)과 소득통산형 또는 연결납세형(consolidation model)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한 기업의 손익을 다른 기업에 대체하여 손익이 서로 상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납부는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미국,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하나의 납세의무로서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기업집단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기초로 2008년말 도입(법인세법 제2장의 5의 신설)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기획재정부, 2008).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매우 단순¹⁾하고 도입 초기에 연결납세의 적용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세²⁾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업집단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결납세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일부가 누락됨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연결납세의 선택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연결납세제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의 집단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1917년에 최초 도입되어 90여년을 거치는 동안 많은 규정이 추가되어 그 복잡함과 분량에 있어서의 방대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최근인 2002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중 63개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고 그 분량은 70여 페이지에 달하였으며, 조세특별조치법은 부칙 36개 조항을 포함하여 77개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고 그 분량은 100여 페이지에 달하였다(이준규·김진수 2005, 141).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법인세법에 20여개 조항의 신설 또는 수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2) 미국은 연결납세를 임의적용으로 변경한 후 상당기간 3/4% 또는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일본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였다.

II.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

연결납세는 지분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단일실체개념(single entity theory)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일실체개념에 의하면 기업집단이 하나의 장부에 의하여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산정되었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초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법인이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단일실체개념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는 매우 복잡한 조정과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무회계상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연결과세표준과 연결세액을 산정할 수도 있겠으나 연결재무제표상의 외부주주지분에 관한 개념이 연결납세에서는 없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수월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법인이 개별납세하였다면 산정되었을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를 개별실체개념(separate entity theory)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결납세제도 중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의 요소를 예시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현행 연결납세제도 상 단일실체개념 및 개별실체개념

항 목	단일실체개념	개별실체개념
① 사업연도 및 납세지	○	
② 이월결손금	○	○
③ 비과세소득·소득공제		○
④ 수입배당·익금불산입·기부접대비·손금불산입	○	
⑤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고정자산, 부동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	
⑥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위 이외의 자산(재고자산, 유가증권 등)		○
⑦ 부당행위계산, 지급이자 부인 등 위 이외의 손익금불산입		○
⑧ 세율적용	○	
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⑩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최저한세		○
⑪ 중소기업 관련규정의 적용	○	

2. 연결납세의 선택 및 유·불리점

연결납세의 적용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집단이 그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해당 법인집단은 각자 개별납세를 할 수도 있고 법인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집단은 연결납세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연결납세를 적용하게 되며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개별납세를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결손통산효과 : 한 연결법인의 결손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이 상계되는 효과를 가진다. 단, 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불리할 수도 있다.
- ② 배당과세배제효과 : 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③ 내부거래이익 과세이연효과 :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연결집단 외부로의 처분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 ④ 한도통산효과 :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의 적용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별납세에 비하여 불리할 수도 있다.

- ① 세율누진효과 : 연결납세의 경우 낮은 단계의 세율이 한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세율이 개별 법인별로 적용되는 개별납세에 비하여 불리하다.
- ② 내부거래손실의 인식이연효과 :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연결집단 외부로의 처분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때까지 소득에서의 공제가 이연된다.
- ③ 한도감소효과 : 내부거래의 제거로 인하여 한도가 감소함으로써 한도초과액이 증가할 수 있다.

3. 연결납세의 통칙

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 연결집단의 성립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6조의 8 제1항). 즉 연결납세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집단의 선택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집단은 연결집단이 되며 해당 법인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법인은 연결법인이 된다(동법 제1조 제7호 및 제8호).

따라서 연결집단은 연결모법인과 최소한 1 이상의 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되고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집단에 속하게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단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연결납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동법 제1조 제7호 내지 제9호 및 동법 제76조의 8 제1항 후단).

비영리법인과 다른 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으며, 외국법인, 청산 중인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성실납세방식·해운기업의 통세·지급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모법인뿐 아니라 완전자법인 및 연결자법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76조의 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2) 완전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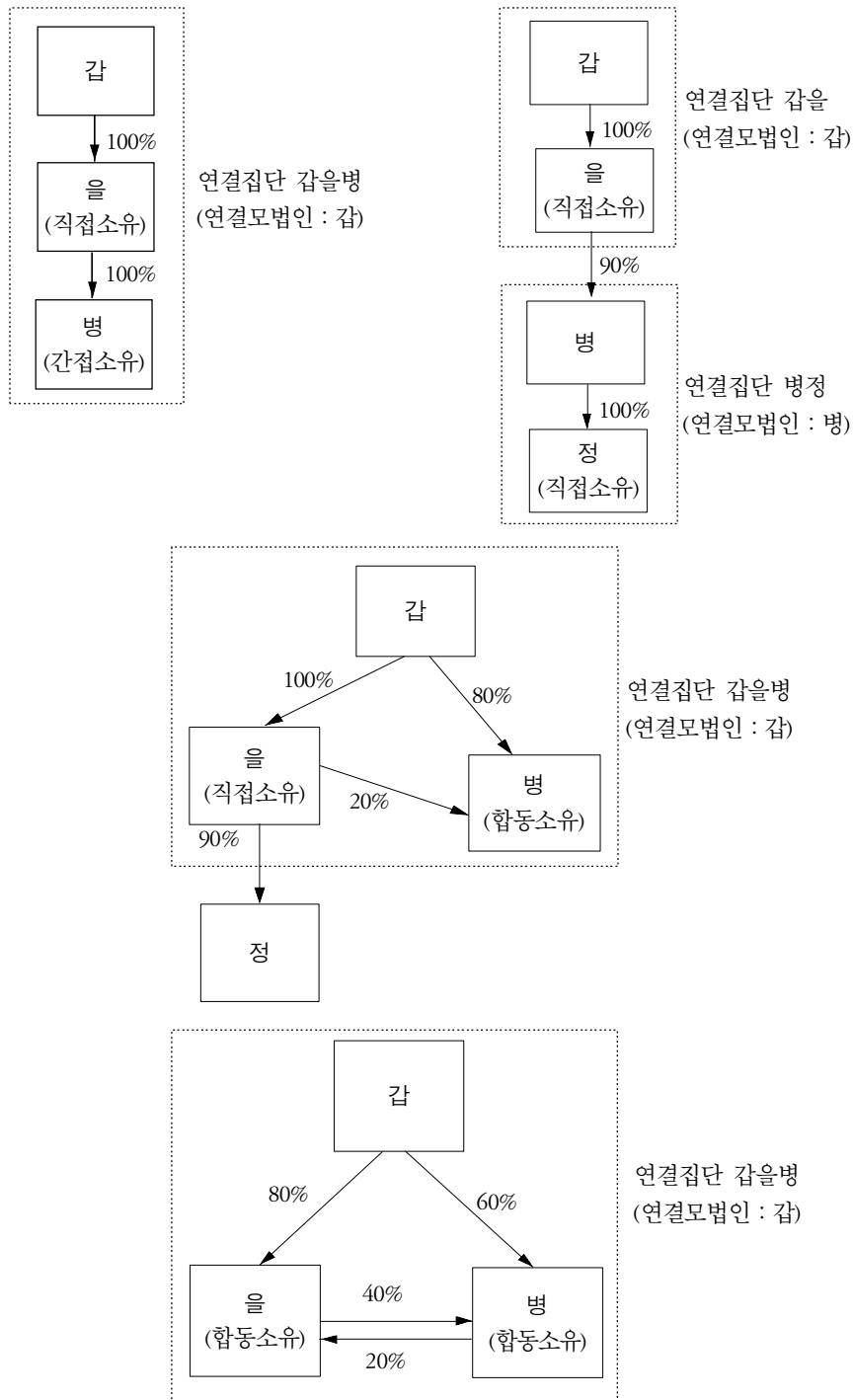
완전지배라 함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출자총액으로 하고 의결권있는 주식 포함)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제76조의 8 제4항).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5%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주식, 동 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 포함) 및 주식평가보상제도에 의한 보상에 따라 발행된 주식(발행된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보유여부를 판단한다(동법 동조 동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2 제3항).

따라서 한 법인의 완전자법인은 다음과 같이 직접소유, 간접소유, 합동소유 및 상호소유를 통하여 완전지배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자신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완전자법인이 있더라도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다.

(3) 연결사업연도와 납세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76조의 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3 제2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동항). 따라서 특정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일치시켜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의제한다(동법 제8조 제4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3 제2항). 한편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그림 1〉 연결집단의 구성 및 범위



나.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1) 국세청장에 의한 승인의 취소

국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76조의 9 제1항).

- 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③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⑤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2) 승인취소의 효과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는 연결집단에 소속되었던 법인들이 각각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각 법인에게 배분되어 개별납세 시 사용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및 제4항).

- ① 공제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결 이월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납세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 ② 연결집단이 납부한 연결 중간예납세액 중 연결법인 별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납세 시 자진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차감되는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3) 승인취소 후 4년 내 재적용 불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동법 동조 제2항).

다.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 10 제1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이후에는 연결집단에 소속되었던 법인들이 각각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중간예납세액의 각 법인에 대한 배분은 연결납세 승인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라.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 11 제1항).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연결자법인의 변경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6조의 12 제1항).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4년 내 재적용 불가, 이월결손금 및 중간예납세액의 배분과 국세청장에 대한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추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동조 제2항).

4. 연결과세표준과 연결세액

가. 연결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및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순차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76조의 13 제1항).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 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단계 연결법인 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결손금의 계산 : 각 연결법인 별로 개별납세를 적용하였다면 산정되었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결손을 계산한다.

제2단계 연결법인 별 연결조정항목(수입배당액 및 기부·접대비)의 제거 : 개별납세 적용시 익금 불산입된 수입배당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된 기부·접대비를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제3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및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고정자산 등(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손익(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시 제외)을 손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손익을 손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을 상각·양도·감액·대손·멸실하거나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및 양도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손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양도손익을 양도법인의 손익금에 산입한다(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8).

제4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 별 배분 : 수입배당액 및 기부·접대비에 대하여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익금 불산입액을 계산한 후 연결법인에게 배분하여 각 연결법인 별로 손익금에 불산입한다.

제5단계 제4단계에서 산정된 각 연결법인의 수정소득 또는 결손금을 통산한다.

제6단계 제5단계에서 통산된 소득(결손)에서 특정 결손금 통산배제 : 합병 또는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발생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 또는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은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므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과 합산하지 아니한다(동법 동조 제2항).

(2) 연결 이월결손금 및 연결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200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포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 포함)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표 2>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다(동법 제76조의 13 제3항).

<표 2> 연결납세시 결손금의 공제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①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인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③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니었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인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 제외)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이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하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서로 다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며,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하는 동일 사업연도의 서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7 제1항 및 제5항). 또한 여기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text{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text{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times \frac{\text{해당 법인의 연결조정후 소득(4단계)}}{\text{연결법인의 연결조정후 소득 합계(5단계)}}$$

<표 2>에서 ④ 및 ⑤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 통산하지 아니하고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동법 동조 제2항).

연결납세방식이 취소·포기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에서 배제되는 경우 연결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납세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결손금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연결결손금의 연결법인별 귀속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7 제4항).

$$\text{연결결손금의 연결법인별 귀속액} = \text{각 연결사업연도 결손} \times \frac{\text{해당 법인의 연결조정후 결손}}{\text{연결법인의 연결조정후 결손합계}}$$

나. 연결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한다(동법 제76조의 15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제76조의 16).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적용에 관하여는 개별납세시의 규정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면제감면세액, 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각 연결법인 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하여 계산한다(동법 제76조의 15 제3항 및 제4항).

〈표 3〉 연결세액의 계산구조

연결과세표준
× 법인세율 (개별납세 시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
+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양도 포함)
= 연결산출세액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면제세액 및 세액공제 포함. 이하 같음) 합계
+ 연결법인의 추징세액 및 가산세 합계
= 연결세액

5.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등

가.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 17 제1항 및 제2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 18 제1항).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 제외) 및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76조의 19 제1항).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 규정은 각 연결법인 별로 적용하여 감면세액의 적용여부 및 금액을 정하며 분납과 물납에 관하여는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동조 제3항).

연결자법인은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 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³⁾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이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8조 제9호). 또한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2조 제4항).

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지 아니하며 연결납세 승인의 취소사유가 된다(동법 제76조의 20 및 동법 제76조의 9 제1항 제4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동법 제76조의 22).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동조 후단).

3)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별 중간예납세액과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III. 연결납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결납세제도는 둘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단일실체개념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제도의 단순화와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및 과세당국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단일실체개념의 일부 훼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의 단순화에 집착하다보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재정수입의 일실과 과세 불평등 등 더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규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와는 관계없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과잉규제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연결납세제도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결납세의 대상 및 범위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보유함으로써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이는 연결법인간의 세액배분 등 소수주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겠으나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연결납세의 적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이 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지배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법인이 연결납세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연결법인 간의 연결세액분담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수주주문제와 아울러 연결납세의 범위를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로 한 것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세수감소의 효과를 최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연결납세제도를 1917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그 대상을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사실상 전부”(substantially all)를 소유한 경우로 하였고(Crestol et al. 2002, 1-4; 이준규 2003, 23), 일본도 2002년에 최초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모회사의 지분비율이 100%인 자회사로 한정하였으며, 호주는 종전에 영국식의 결손이전제도를 채택하여 오다가 2002년부터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로 변경하면서 그 대상을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는 자회사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완전지배 자회사만을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은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완전지배 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단계에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완전지배의 판단을 모회사의 형식적인 주식소유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포함

완전지배의 개념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순수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주식발행이 연결납세의 적용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특히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주식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연결납세를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에서 IRC라 함)의 경우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과 종업원 지주제도에 의하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되, 해당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이고 비누적적인 우선주식이고,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 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금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할증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IRC §1504(a)(4)).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완전지배 자회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의 입법례에서와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주식소유상황의 형식적 판단

완전지배 자회사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소유상황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으나 공제시킨 내 사용가능성이 없는 연결집단에게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조세절감액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해당 연결집단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하며 그 대신 언제든지 해당 주식을 다시 되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해당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기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해당 연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통한 조세절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식의 환매조건부 양도나 양도후 매수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연결법인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손금 공제의 제한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하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함)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

월결손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가진 법인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세법상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⁴⁾의 개념에 의한 결손공제 규제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결모법인(common parent)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소유요건(80% 이상)을 충족하여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공제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에 대하여 공제제한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역취득(reverse acquisition, Treasury Regulation §1.1501-75(d)(3))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복잡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에 대하여도 동일한 공제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결손공제에 규제가 가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전의 결손에 대하여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을 구별하지 않음에 따라 역취득에 대한 복잡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행 연결납세제도하에서의 결손금공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 완전지배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제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완전지배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이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기 때문에 연결납세를 적용하더라도 결손공제에 제한을 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지배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이후까지 결손금공제가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연결납세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손공제를 목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가진 법인을 취득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완전지배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러한 조세회피행위에 이용될 수 없으므로 공제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도 완전지배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며 미국 세법의 입장도 같다(Treasury

4) SRLY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의 누적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손익만에 의하여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Treasury Regulation §1.1501-21(c)(1)(i)). 여기서 SRLY라 함은 각 연결법인이 개별납세하였던 사업연도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SRLY로 보지 아니한다(Treasury Regulation §1.1501-1(f)(1) & (2)).

- ① 연결모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의 해당 개별납세 사업연도
- ③ 자산을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게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의 해당 개별납세 사업연도

Regulation §1.1501-1(f)(1) & (2)).

나.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간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제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4년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될 수 있다. 이는 완전자법인이 될 당시 존재하던 내포손실을 그 후 실현시켜 이로 인한 결손을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결손공제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공제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이 내포손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대신에 연결모법인에게 합병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지만 과세 상 다르게 취급되어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게 된다. 해당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합병 후에 해당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되지만 해당 사업에서 합병 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합병 전에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합병 후에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 4년간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세 상 취급이 차별적이다.

한편 규제를 한다면 현재의 연결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법인을 새로이 취득하는 조세회피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가 되지 아니한다. 새로 연결집단에 가입하는 연결자법인의 결손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면서 새로 연결집단에 가입하는 연결자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결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하는데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제가 비대칭적인 것이다.

따라서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의 공제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한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대신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에 대한 공제제한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 연결집단이 다른 법인 또는 다른 연결집단에 소속되는 경우 해당 연결집단의 해체

특정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다른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에게 취득되어 완전 지배되는 경우 그 취득되는 연결집단은 해체되며 종전의 연결법인은 새로운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연결집단이 가지고 있던 미사용 이월결손금은 종전의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되고 이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이 새로운 연결집단에 소속되면서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

생한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어 그 공제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종전의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공제될 수 있었는데 새로이 연결집단이 구성됨에 따라 공제가 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종전의 연결집단은 해체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연결집단이 유지되는 상태로 다른 연결집단에 소속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연결집단 내에서 종전의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이었던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종전의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이었던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종전의 연결집단이 새로운 연결집단 내에서 별도의 하위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하위집단의 결손금은 하나의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세법의 입장도 같다(Treasury Regulation §1.1501-21(c)(2)).

라. 소급공제의 적용상 제한의 필요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대하여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에 준하는 적용규정과 제한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법인이 다른 연결집단에 새로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연결집단에게 승계되어 사용될 수 있고, 연결집단이 해체되는 경우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되어 해체 후 각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소급공제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우선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집단에게 결손이 발생하면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집단이 납부한 연결세액이 있는 경우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완전지배관계를 통하여 새로이 연결집단에 가입하게 되고 해당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게 결손이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게 소급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보되, 새로이 연결법인이 된 중소기업이 연결집단과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다고 본다면 소급공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법인으로 본다면 소급공제는 가능하게 된다. 이월공제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연결집단의 결손금 중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집단이 해체된 직후의 개별 사업연도에 각 법인에게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급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연결집단의 해체 당시의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규정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거래형태를 빙자·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임승순 2008, 681).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그 대상이며 연결집단에서의 연결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동일한 연결집단에 소속된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실체개념을 적용하여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간 거래는 내부거래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그 당시 인식되지 않고 실현될 때까지 그 인식이 지연된다. 즉 단일실체개념에 의하면 연결법인간의 거래는 내부적인 자산과 부채의 재배치에 불과하며 연결집단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를 변동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 등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금의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18 제2항).

예를 들어 연결집단 AB에 속해 있는 연결법인 A가 다른 연결법인 B에게 토지를 1억원(장부가액 2억원, 시가 2억 5천만원)에 매각하고 토지양도소득 1억원(순익금)을 계상한 경우 연결법인 A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5천만원이 익금에 산입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었으므로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 사례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5천만원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5천만원뿐 아니라 장부에 계상된 1억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장부에 계상된 1억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조세효과가 실제 받은 대가부분에도 미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5천만원에 대하여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나 논리상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익금불산입될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면 해당 양도를 거래로 보지 않는 한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으로써 거래로 보기도 하는 모순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연결집단에 속한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

4. 내포손익

내포손실(built-in loss)이라 함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차이이며 내포이익(built-in gain)이라 함은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말하는 데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이러한 내포손익을 이용하여 조세회피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내포손익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연결집단이 취득하여 해당 내포손실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이후에 실현시켜 결손금을 발생시킨 다음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제시한내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결손금을 가진 연결집단이 내포이익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취득하여 해당 내포이익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이후에 실현시켜 소득을 발생시킨 다음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 내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것은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을 취득하여 해당 내포손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완전자법인이 될 당시 내포손실이 없는 법인의 취득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의 공제에 대하여 규제하는 대신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에 대한 공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내포손실에 관하여는 미국 세법의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세법상 내포손실은 연결모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IRC §382(지분변동후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SRLY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내포손실은 실제로 실현되어 인식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SRLY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SRLY에 발생한 가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내포손실은 연결집단에 가입할 당시 연결자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한 미실현 내포손실의 합계에서 미실현 내포이익의 합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가총액의 15%와 \$10,000,000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포손실이 없는 것으로 하며, 관계회사집단에 가입한 후 5년 내 자산의 처분으로 내포손실이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제한을 적용한다(Treasury Regulation §1.1501-15; 이준규 2003, 127-128).

일본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내포손실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자산을 평가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익이 인식되는 경우 연결납세를 시작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어 연결납세의 적용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입법례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에 내포손익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다면 미국과는 달리 연결모법인의 내포손실에 대하여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⁵⁾ 내포이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여지가

5)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결손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포손실에 대하여도 동일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있으므로 내포손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포손익의 산정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면 되고 내포손익의 금액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와 차이로서 허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인 30%를 적용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과 시가총액의 차이가 자산의 시가총액의 30% 이내이고 내포손익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포손익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는 미국 세법에서와 같이 5년내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때 해당 내포손실의 실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공제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식가액조정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결법인의 손익이 통산되어 과세된다. 이 때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를 적용한 이후 누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던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대로 원가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면 처분가액에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누적 소득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증가분이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결모법인에게 과세됨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는 것과 함께 이중과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김진수·이준규 2002, 124).

물론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을 별개의 실체로 보아 각각 개별납세하는 경우에도 연결자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결자법인에게 과세되고 이를 기초로 배당하거나 연결모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때 다시 한번 연결모법인에게 과세됨으로써 두 번 과세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연결자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이렇게 장부가액을 수정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때 주식양도차익이 감소하며 연결납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중과세의 효과가 제거된다(김진수·이준규 2002, 125).

또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연결자법인에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면 연결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 공제되거나, 결손에 대하여 이중공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연결자법인에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감액시켜야 한다.

연결자법인의 손익발생상황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 취득한 주식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익 또는 배당액 중 해당 근로자들의 지주비율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주식

가액조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이미 이러한 지분가액조정에 대하여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1)하고 있으며 연결납세제도에 주식가액조정을 도입하려면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의 지분가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다.⁶⁾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동업기업에게 결손이 발생하여 지분가액을 감액하더라도 지분가액이 0 이하로 조정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동업자들에게 배분되지 못한 결손은 이월되어 5년 이내에 배분되는데(동법 제100조의 18 제2항),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손익의 배분이 아니라 손익의 통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결손을 공제하지 않고 이월하는 대신 결손은 전액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하되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0 이하로 조정하거나 미국 세법에서처럼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계상하고 장래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0 이하의 주식가액 또는 초과손실계정을 감액하여야 한다(Treasury Regulation §1.1502-19).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의 잔액은 주식처분과 함께 소멸하며 동 금액은 처분이익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6. 연결세액의 배분

연결세액은 연결모법인이 전액 납부하고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로 배분되는 세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결모법인이 연결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연결세액의 배분과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법인세법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연결세액 배분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에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킨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법인세법상 연결세액의 배분규정은 세무계산상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조정하고 세무상 자기자본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⁷⁾할 뿐이며, 연결집단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6)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과세소득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손익 중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만 명문으로 지분가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익금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의 경우 현금지출로 인하여 자산가액이 감소하는데, 해당 항목이 동업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분가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면 자산합계와 지분합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며, 해당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배분액이 지분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이중공제의 효과를 얻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에 대하여도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준규·이은미 2008, 90).

7) 연결법인세의 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주식가액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이준규·이은미 2008, 90 참조), 세무상 자기자본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액된다(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참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 이러한 연결세액의 실제배분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간의 세액분담약정(tax sharing agreement) 또는 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연결모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완전지배법인만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세액을 배분하더라도 주주간의 경제적 이해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있는 경우와 채권자에게는 연결세액의 분담방식이 공평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만약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결세액의 배분액과 세액분담약정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수한 연결세액의 배분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상 세액분담액 보다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연결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도 있고 출자로 볼 수도 있으며, 연결자법인이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연결모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도 있고 배당 또는 출자의 반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세법의 경우 출자와 분배(일반적으로는 배당)로 보며(IRC §1552 ; Treasury Regulation §1.1502-33(d)(1) (ii)), 이러한 입장은 그 차액이 실제로 채권이나 채무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액의 산정방법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행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법인세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뿐 결손을 다른 연결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대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특정 연결법인이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공제시한내에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결손을 공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그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결손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 세법에서처럼 연결집단의 선택에 따라 결손 등 조세혜택의 사용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Treasury Regulation §1.1502-33(d)(2)~(4)).

7. 개별실체기준을 적용하는 항목

연결납세는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과세표준과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법인의 개별납세 시 산정되는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하는 개별실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간주임대료의 적용대상판정, 퇴직급여, 대손충당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최저한세 등이 개별실체기준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다. 이 들 중 대부분은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

8) 미국의 사법부에서도 IRC 및 Treasury Regulation에 세액배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세무상 잉여금(E & P)의 산정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세액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Crestol et al. 2002, 7-59~7-60 ; 이준규 2003, 73).

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이며, 미사용 이월세액공제와 같이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면 연결법인 별 한도초과와 한도미달이 통산될 수 있어서 연결납세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집단이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새로이 도입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완전지배 자회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이고 비누적적인 우선주식이고,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 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완전지배 자회사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소유상황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함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환매조건부 양도나 양도 후 매수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도 완전지배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넷째,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의 공제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한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신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에 대한 공제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내포이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여지가 있으므로 내포손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하되, 내포손익의 산정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고 내포손익의 금액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 5년 내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때 해당 내포손실의 실현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공제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결집단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결손금의 소급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에 준하는 공제의 제한이 필요하다.

여섯째, 단일실체개념에 의하면 연결법인간의 거래는 내부적인 자산과 부채의 재배치에 불과하며 연결집단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를 변동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하여야 할뿐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

나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동일한 연결집단에 속한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며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연결자법인의 손익에 대하여 이중과세되거나 이중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와 유사한 주식가액조정이 필요하며 주식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손은 초과손실계정으로 처리하고 주식처분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연결납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항목 중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상 세액분담액 보다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세무상 연결자법인에 대한 출자로 처리하고 연결자법인이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연결모법인에 대한 배당(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08. 「2008년 세제개편안 세무추진내용」.
- 김광윤. 2001.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 35-60.
- 김진수 · 이준규.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종철 · 오윤택.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 _____. 2003.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영화회계법인.
- 김찬섭. 1999.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배준호. 2003.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신찬수. 2005. 우리나라의 그룹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 안경봉. 2002. “기업집단의 과세문제 - 연결납세제도”. 2002년도 창립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법연구회.
- 이우택. 2001.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7호 : 69-128.
- _____. 2000.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26집. 한국조세연구소.
- 이준규. 2003.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이준규. 2008. 「세법개론」. (주)영화조세통람.
- 이준규 · 김진수. 2005.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가능성. 한국조세연구원.
- 이준규 · 이은미. 2008.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4권 제1호 : 51-98.
- 임승순. 2008. 「조세법」. 박영사.
- 최기호.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 剛崎和雄 · 望月光南. 2000. 「日米對比 連結納税のポイント」. ぎょうせい.
- 大倉雄次郎. 2004. 「連結納税制度の導入企業動向調査と問題点の検討」. 平成卷15年頭論文. 税経通信 59(6).
- 西本靖宏. 2004. “租税法研究会(113) 連結納税制度に對する經濟界の評價と反應 - 連結納税制度についてのアソケート調査より”. JURIST.
- 税理士法人トーマツ(編). 2002. 「詳解 連結納税 Q&A」. 清文社.
- 税制調査會. 2001. 「連結納税制度の基本的考え方」.
- 税制調査會. 2001. 「平成14年度の税制改正に關する答申」.
- 須田徹. 1991. 「アメリカの 税法」. 中央經濟社.
- 租税研究協會. 2002. 「日本型連結納税制度について」.
- 井上久彌 外 2人. 2002. 法人税の計算と理論. 税務研究會出版局.

- 井上久彌. 1995. 企業集團税制の研究. 中央經濟社.
- 住田孝之. 1996. 連結納税制度の導入に關する検討. 商事法務 No. 1428.
- 増井良啓. 1996. 持株會社と租税法. 商事法務 No. 1428.
- _____. 1997. 「連結納税制度の國際的側面」. ジュリスト、No. 1104.
- 青山監査法人. 1998. 「總解説 連結納税制度：分社化・持ち株會社の税務と會計」. 日本經濟聞社.
- PwCコンサルティング(株) FMSグループ. 2002. 「連結納税システム」. 東洋經濟新報社.
- Ault, Hugh J., and Brian J. Arnold. 2005.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spen Publishers.
-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04. *Consolidation in Brief*.
- Bittker, I. Boris, and James S. Eustice. 2002.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 Lamont.
- Blumberg, Phillip I. 1989.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General)*. Little Brown.
- Blumberg, Phillip I., and Kurt A. Strasser. 1992.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Specific)*. Little & Brown.
- Crestol, Jack, Kevin M. Hennessey, and Richard F. Yates. 2002.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arren, Gorham & Lamont.
- Dolan, Kevin D., and Michael F. Walsh. 1995. "Use of Holding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es* Vol. 73.
- Lerner, Herbert J., and Richard S. Antes. 2000.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Filing Consolidated Returns*. Matthew & Company, Inc.
- Ralph, John. 1998. *A Strong Foundation*.
- RIA. 2002. *Internal Revenue Code & Regulations*.
- Saunders, G., J. Scott, and J. M. Watterston. 1997. *Corporation Tax 1997—98*. Tolley Publishing Co.
- Schmitthoff, Clive M., and Wooldridge Frank. 1991. *Groups of Companies*, Sweet & Maxwell.
- Warner, James C. 2003. *Consolidated Returns Guide*. CCH.

Problems with and Remedies for a Consolidated Return

Juneq Lee* · Kapsoon Kim**

— <Abstract> —

This study evaluates and seeks remedies to improve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at the end of 2008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s follows;

First, in determining a completely controlled subsidiary, the term "total outstanding stock" should not include non-voting, non-cumulative, non-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and a transfer of stock with a condition of repurchase or a option to repurchase is not regarded as a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stock.

Second, a limitation on the deduction of loss arising after a subsidiary was controlled completely but before a consolidated return was elected, and loss arising within 4 years after a subsidiary was controlled completely should be eliminated. Instead, a limitation in relation to built-in gain or loss and a limitation on the loss carryback should be introduced.

Third, recaluculation of income arising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should not apply for a consolidated retrun, stock basis adjustments are required for the income or loss of a subsidiary, and minimum tax and foreign tax credit of a consolidated group should apply on a consolidated basis.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allocated tax amount under a consolidated return system and allocated tax amount in accordance with tax sharing agreement is treated as contribution or distribution.

<Key words> Consolidated Return, Loss Carryforwards, Built-in Gain(Loss), Single Entity Theory, Intercompany Transac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